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9년 6월 5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국장 김정수)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점가 정의 수정(안 제2조제4호)
- 전통시장의 인정, 상인회의 등록, 시장관리자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절차 명시(안 제11조, 제23조, 제29조 신설)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갱신 횟수 등 명시(안 제30조의2 신설)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철회 절차 명시(안 제36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과 상이한 “상점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에서는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30조의2조, 안 제3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와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1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점가 정의 수정(안 제2조제4호)
- 나. 전통시장의 인정, 상인회의 등록, 시장관리자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절차 명시(안 제11조, 제23조, 제29조 신설)
- 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갱신 횟수 등 명시(안 제30조의2 신설)
- 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철회 절차 명시(안 제36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3) 공유재산 관리사항 사전협의: 의견 없음
- 라. 입법예고(2019. 5. 2. ~ 5. 2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11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3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9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장(제3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

제3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
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
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p> <p>5. ~ 8. (생략)</p> <p>제11조(시장의 인정 취소) <u><신 설></u></p> <p><u><신 설></u></p> <p>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u>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u></p> <p>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u>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u></p>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신 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

제3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